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3-27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2누154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원고, 항소인	A
	소송대리인 변호사 ○○○
	소송복대리인 변호사 ○○○
피고, 피항소인	○○시장
제 1 심 판 결	수원지방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구합60876 판결
변 론 종 결	2023. 10. 20.
판 결 선 고	2023. 11. 10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1. 8. 31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4,071,580원, 지방교육세 1,167,440원, 농어촌특별세 583,710원, 합계 15,822,7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3-27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.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개인사업체 직원 1명의 업무공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'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'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 6명과 이 사건 개인사업체 직원 1명이 각각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추징할 취득세 등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.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.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